

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<개정 2010. 12. 29.>

제41조의16(경영의 위탁) 법 제40조제4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12. 29.>

1.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
2. 차량소유자
3. 금전지급(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포함한다) 및 채권 · 채무 관계
4. 차량의 대폐차
5. 차량의 관리 및 운영
6.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
7.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
8. 운수종사자 교육
9. 계약의 해지사유
10. 위 · 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
11.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
12. 양도 · 양수에 관한 사항
13.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1. 12. 31.]

제42조(경영 지도계획 등) 연합회는 법 제41조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영 지도업무를 하려면 미리 경영 지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43조(재정지원)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1. 12. 31., 2013. 3. 23.>

1. 삭제 <2013. 7. 11.>
2. 삭제 <2013. 7. 11.>
3. 삭제 <2013. 7. 11.>
4. 삭제 <2013. 7. 11.>
5. 화물자동차의 감차
6. 그 밖에 긴급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화물운송에 대체 사용된 차량에 대한 피해의 보상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43조의2(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) ①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1. 국내 주요 물류시설의 현황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
 2. 화물자동차의 운행실태에 관한 사항
 3.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에 관한 사항
-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1.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
 2.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 · 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1. 12. 31.]

제43조의3(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) ①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 <개정 2014. 7. 15., 2020. 11. 18.>